

[사 건 명] **행심 2013-8~10**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 등 3명

피청구인 : ○○중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6. 10. 청구인 ○○○ 등에게 내린 「전학등」의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 가. 2013.4.3. ○○중학교 학생 ●●●(피해학생이라 한다)이 같은 학교 학생인 청구인의 교복상의를 밟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욕하고 발로 엉덩이를 주먹으로 가슴 등을 수회 때렸으며 추후 교실로 다시 찾아와 주먹으로 가슴 배를 때렸다.
- 나. 2013.4.4. 청구인과 청구인 ▽▽▽ (행심2013-9호로 청구함. 이하 청구인 ▽▽▽이라 함)등의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찾아와 복도로 불러내 청구인은 “너 죽을래”, “야리지 마”라며 주먹으로 가슴, 배를 때리고 목 조르고, 청구인 ▽▽▽은 “니 야리지마”라고 말하였다.
- 다. 2013.4.24. 강원도 수련회에서 청구인이 피해학생 앞에 교복상의를 던져 밟게되자 시비를 걸고, 청구인은 “또 밟았냐? 니네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욕하고 주먹으로 가슴, 배 때렸고, 청구인 ▽▽▽은 “눈깔이 없냐”며 손으로 이마를 쳤으며, 청구인 △△△(행심2013-10호로 청구함. 이하 청구인 △△△라 함)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병신아 괜찮냐”라고 말하였다. 또한 같은날 저녁 청구인은 피해학생의 숙소로 찾아가 청구인 ▽▽▽과 △

△△ 등을 포함한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학생을 폭행하였다.

- 라. 2013.4.25. 수련회 숙소에서 청구인과 청구인 ∇∇∇, △△△ 등은 피해학생에게 세탁비 명목으로 5,000원을 받았다.
- 마. 2013.5.9. 청구인과 청구인 ∇∇∇, △△△를 포함한 6명이 피해학생의 교실로 찾아와 청구인은 “야 병신아 돈 안줘, 형으로 불러, 존대말 써”라며 주먹으로 등을 발로 허벅지 등을 걷어찼고, 청구인 ∇∇∇은 “씹던 껌 주까” 하며 뺨, 머리 등을 때렸으며, 청구인 △△△는 피해학생의 슬리퍼를 뺏어 피해학생의 허벅지를 때리며 “좋은 먼지털이다”라고 말하였다.
- 바. 2013.6.4. ○○중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청구인에게 『전학, 특별교육이수(5시간),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서면사과』 조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사. 2013.6.10. 청구인에게 자치위원회 심의결정을 통지하였고, 이 결정서를 통보받은 청구인은 2013.6.17. 이 사건 2013.6.10.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II.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

- 1) 가해학생에 대한 강압적인 조사를 통하여 사실이 극히 왜곡된 관련학생들의 진술서가 ○○중학교 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의 심리의 기초로 의결한 것이므로 위법함이 명백하고 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2)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법 및 내부규정을 만족하지 아니한 자치위원회의 구성과, 학부모위원이 과반수가 되지 아니한 자치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당연히 무효이다.
- 3) 피청구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참석요청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의견진술을 부여하는 등의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구두통지만을 했으

며, 회의내용, 쟁점사실관계에 대한 상세한 언급도 없었다. 또한 2013.6.4. 회의 당일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위압적으로 가해학생을 추궁하여 학생이 가해 사실을 자백하도록 유도 한 회의는 진행상의 하자로서 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4) 피청구인은 자치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근거도 없고,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상담결과 보고서도 없이 자의적으로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처벌의 근거가 불분명하며, 학생들이 어떠한 개선의 기회도 가질 수 없게, 단 한 번의 결정으로 무거운 징계를 내린 금번 처분은 상기 의결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5) 초·중등교육법과 학교폭력예방법에 의거 징계요청사유가 피해학생 등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이거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할 경우에만 수개의 조치를 병과 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어떠한 근거도 없이 병과조치를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이 사건의 사실 관계

피해학생은 평소 남학생들의 성기를 만지며 야한 농담을 자주하는 학생으로 중학교에 갓 입학한 13세 가해학생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학생에게 흉악한 폭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

- 1) 2013.3.입학식 다음날부터 4월 초까지 피해학생은 청구인에게 장난을 걸고 몸과 엉덩이를 만지는 일이 계속 되오던 중, 2013.4.3. 스포츠 시간에 피해학생이 청구인의 교복상의를 밟은 것이 계기가 되어 며칠이 지난 후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었다.
- 2) 2013.4. 중반에 학교복도에서 우연히 만나 재차 사과를 요구하면서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고, 2013.4.24. 수련회 첫째 날, 피해학생이 청구인의 교복 상의를 밟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피해학생의 숙소를 찾아가 재차 사과를 요구하면서 우발적으로 피해학생의 엉덩이와 배에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였다.

- 3) 2013.4.25. 수련회 둘째 날, 아침 조회시간 전교생이 줄을 서는 도중에 청구인은 교복 상의 세탁비 7,000원을 요구하였고, 5,000원을 세탁비로 받았다.
- 4) 2013.5.9. 점심시간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책상에서 계속 본인이 하던 일을 하는 피해학생에게 화가 난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앉아 있는 의자를 밀고, 허벅지와 배에 신체접촉을 하였다. 피해학생이 복도를 나가자 따라나서며 계속 사과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학생이 사과하였으며, 이런 도중 피해학생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하여 평소 불만이 있던 다른 학생들과의 신체접촉도 청구인과는 관련 없이 일어난 일이다.
- 5) 청구인은 평소 책임감 강하고, 신뢰받는 학생으로, 1개월 넘는 기간 동안 피해학생에게 성추행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음에도 참아오던 중 교복 상의를 밟는 일을 계기로 우발적으로 피해학생과 4차례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청구인이 집단으로 공모하여 지속적으로 피해학생을 폭행하고 심한 욕설을 하였다는 주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

III.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1) 이 사건은 4월경부터 청구인은 본인의 교복상의를 밟은 피해학생에게 청구인들이 세탁비 및 수리비로 돈을 요구하였고, 5,000원을 받아내기도 하였으나, 더 받을 목적이었던 청구인들이 계속하여 피해학생을 괴롭힌 사건으로

- 2)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10회 이상의 상습 폭행, 폭언, 금품 갈취 한 사실로 2013.6.4.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게 강제전학 등의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및 타당성

- 1) 본 사안은 청구인들이 고의적, 지속적, 집단적 학교폭력 사건으로 피해학생에게 정신적인 모욕 및 폭행, 금품갈취를 자행한 사건으로, 피해학생은 정신과 치료도 받고, 현재까지 결석 중이며, 아직도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현재 경찰조사를 받은 학생들의 진술이 대부분 자치위원회의 조사와 일치하고 더 많은 가해 사실이 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청구인 측이 주장하는 가해사실 내용은 축소 포장 된 것이며 자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
- 2)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폭력사건 조사과정에서 관련 학생들에게 위협을 가하여 신체적 접촉을 '때렸다'로 표현하게 하지 않았다. 청구인 ▽▽▽, △△△의 경우 다른 가해학생과의 대면으로 첫 번째 작성한 진술서가 거짓이었다고 인정하고 진술서를 2회 작성한 바가 있으며, 경찰 조사 결과 더 많은 폭언 및 폭력행위가 자행되었음이 밝혀진 바 이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왜곡된 진술서가 자치위원회 심리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3) 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본교 규정에 의거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같은 법에 의거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부여하였다.
- 4) 피청구인은 이 사안과 관련한 회의 참석 통지를 서면으로 발송하지 못하였으나, 2013.5.10.(금), 5.15.(수), 5.28.(화) 3회의 유선 통화로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추후 진행과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였고, 자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충분히 가해학생의 잘못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알리려고 한 것이지, 가해학생과 보호자를 추궁하려 한 의도는 없었다.
- 5) 또한 본교의 규정의 학교 폭력에 대한 처벌범위는 각각의 사안을 고려하여 처벌하기 위한 범위이지, 그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범

위가 아니고, 사유의 경중에 따라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하나 본 사안은 피해학생이 피해가 중하다 보니, 가해 학생에 우선조치가 시급한 사안이었으며, 선도가 긴급한 사안이었으므로 수개의 조치를 병과하여 결정한 자치위원회 회의결과 청구인에게 내린 조치는 적법하게 결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22조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8조 제16조

2. 판 단

가. 인정되는 사실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및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1) 피해학생이 청구인의 교복 상의를 뺐은 사유로 인하여 서로 간에 실랑이가 있었던 중에 2013.5.9. 학교내에서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가해학생은 청구인, 청구인 ▽▽▽, △△△외 9명, 피해학생은 ○○○이다.
- 2)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3.4월 초 교복 상의를 뺐은 피해학생을 수차례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2013.4.24. 강원도의 학교 수련회에서도 재차 교복 상의를 뺐은 사유로 피해학생의 숙소를 찾아가 청구인 ▽▽

▽, △△△를 포함한 동급생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머리, 뺨, 옆구리, 배 등을 폭행한 사실과, 다음날 교복 상의 세탁비 명목으로 7,000원을 요구하였으나 5,000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 3) 또한 2013.5.9.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교실로 찾아가 못 받은 세탁비 2,000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으나, 피해학생이 이를 묵살하자 의자를 밀치고, 멧살을 잡고, 수차례 얼굴, 몸통, 뺨 등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 4) 같은날 청구인 ▽▽▽은 피해학생에게 씹던 껌을 내밀어 “이 껌 씹을래?”라고 말하며 머리 등을 폭행한 사실과, 청구인 △△△는 피해학생의 슬리퍼 뺏아서 허벅지를 때리며, “좋은 먼지털이다”라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을 보면, 자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에 정해진 조치를 할 수 있고, 제5항에서는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적정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 2)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자치위원회의 회의개최를 서면통보 방식이 아니라 구두로 간략하게 시간, 장소만 알려주었으며, 자치위원회 참석 이전에 청구인의 가해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피청구인측이 청구인에게 한 조치가 여러 절차와 내용면에서 위법하고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는 우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조치를 한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 3) 학교폭력대책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에서 요구하는 적정절차가 반드시 자치위원회의 개최통지를 문서로 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한 피청구인은 사안 설명을 위해 2013.5.10, 5.15, 5.28, 3회의 유선 통보로 가해학생들의 부모님에게 사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으며, 청구인의 대리인도 설명을 들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후 개최된 자치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리인이 출석하여 사안에 대하여 충분히 의견진술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달리 사안에 대한 부정확한 고지와 자치위원회 참석 통지를 고지 받지 못하여 의견진술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또한 자치위원회 구성의 위법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자료들에 의하면, ○○중학교의 자치위원회는 적법하게 구성되어 적법하게 회의가 소집되었음이 인정되어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5)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적절 하였는지에 대해 살펴 보면 청구인은 동급생인 피해학생이 청구인의 옷을 밟았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다른 여러 명의 가해학생들과 함께 폭행을 가하고 세탁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고도 돈을 더 요구하다가 불응하자 폭행을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극도의 정신불안 증세를 보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하였고, 현재 피해학생은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그 질 또한 여러 번에 걸쳐 다수의 가해 학생과 함께 지속적인 폭행을 한 경우로써 엄중하다 할 것이다.
- 6) 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39호)에 의하면 학교폭력대책 및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경우 그 『조치』 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향후 입학사정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고, 또 청구인의 경우 가장 중한 조치인 전학 처분을 받은 점과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라는 낙인 등으로 인한 피해 또한 적지 않다 할 것이나,
-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가 청구인의 학습권 보

다는 피해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점이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계속하여 같은 학교에서 학습을 하게 할 경우 피해학생에게 또 다른 피해를 유발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해서 청구인이 입는 피해의 보호 보다는 피해학생을 보호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과 학교폭력의 예방이라는 공익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 8) 결국 이러한 사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V.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이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